

광주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단523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59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 심금 4,356,916원을 위 법원에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18. 소외 C를 채무자, D조합(이하 ‘D조합’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771호로 청구금액을 94,000,000원으로 하여 C의 D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D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C를 채무자, D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5952호로 청구금액을 140,252,400원으로 하여 C의 D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9. 제3채무자인 D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11. 20.부터 2020. 2. 13.까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조합로부터 C의 급여채권 중 2019. 11.분부터 C가 퇴직한 2020. 2.분까지 합계 10,892,290원을 지급받아 추심하였고, 2019. 11. 22. 및 2020. 2. 13. 집행법원에 위 수령액에 대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7.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6466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 제3채무자인 D조합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D조합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기 전 이미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추심받은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경합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10,892,2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¹⁾ 4,356,916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조합로부터 추심할 당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 및 그 사유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추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및 그 사유신고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원고의 압류가 경합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이상 추심 당시 압류 경합을 몰랐었다는 사정만으로 동법 소정의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1) $10,892,290\text{원} \times 94,000,000\text{원(원고 청구금액)} \div 234,252,400\text{원(원고 청구금액} \\ 94,000,000\text{원} + \text{피고 청구금액 } 140,252,400\text{원})$